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8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4.23.)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성일종 의원)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을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교 지원율을 제고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 규정으로써 어떠한 인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대한민국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 지원자 및 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